

# 「자활기업 활성화 금융지원 협약 보증」 이용 안내

## □ 제도개요

담보능력이 부족한 기업에 대하여 신용보증기금이 미래성장성과 신용도를 심사하여 신용보증서를 발급함으로써 기업이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



## □ 이용안내



□ (지원대상) 「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」를 발급받은 자활기업

구 분	특례보증	일반보증
기업당 한도	1억원*	1억원 초과
보증비율	100%	80% ~ 90%
보증료율	고정보증료율 0.5%	평균 1.3% 수준
평가방법	사회적가치 중심의 별도 평가(SV10등급 체계를 통해 SV8등급 이상을 지원대상으로 운용)	재무가치 중심 평가

\*단, 자활기업이 (예비)사회적기업 또는 협동조합에 해당하는 경우, 한도 3억원 적용

□ (상품구조) 5년 만기(신규)→3년 만기(1차)→3년 만기(2차), 총 11년간 지원

구 분	만 기	분할상환
신규 보증 취급	5년	-
1차 갱신 취급	3년	30% 이상 분할상환
2차 갱신 취급	3년	전액 분할상환

□ 지원내용

구 분	우대사항
대상채무	운전자금 및 시설자금
보증비율	100% 적용하되 2차 갱신보증부터 일반 보증비율* 적용
보증료율	협약에 따라 5년간 0.2%p 보증료 지원
보증승인	보증승인 여/부는 신보 내규에 따라 결정
컨설팅	보증지원 후, 경영컨설팅 비용 지원

\* 일반 보증 비율: 보증기업에 따라 차등 적용하나, 평균 90% 보증비율 적용

□ (운용기간) 협약에 따른 출연금 소진 시점까지 운용 예정

□ 우대사항

- 시중은행\*과 업무협약에 따른 보증지원시 최장 5년 이내 보증료지원(0.3%p), 우대금리 제공

\* 시중은행: 국민, 기업, 수협, 신한, 우리, 하나(한도 소진 시 협약 종료)

- 보증심사 시 부채비율 및 신용도 취약기업 주요 항목(신용도 열위 등) 적용 배제

## □ 제출서류

- ▶ 자활기업 인정서, 지원대상 자활기업 확인서
- ▶ 기업실태표(일반형 또는 협동조합형)
- ▶ 재무제표
- ▶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
- ▶ 사업장 및 거주주택 임대차 계약서 사본(임차시)
- ▶ 법인등기부등본, 주주명부(법인시)
- ▶ 납부내역증명원 등

## □ 신청방법

- (특례보증) 지역별 영업본부 ESG보증팀 문의

본부명	보증 관할구역 (주사업장 소재지 기준)	문의처
서울서부영업본부	수도권, 제주	02-710-4605
서울동부영업본부	수도권, 강원	02-2141-3304
경기영업본부	수도권	031-230-1528
인천영업본부	수도권	032-450-1673
부산경남영업본부	부산, 경남, 울산	051-678-6011
대구경북영업본부	대구, 경북	053-430-8941
호남영업본부	광주, 전남, 전북	062-607-9271
충청영업본부	대전, 충남, 충북, 세종	042-539-5602

- (일반보증) 신용보증기금 고객센터 전화문의(☎1588-6565)

## □ 기타문의

-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일자리사업본부 성장지원부(☎02-3415-6986)